

법무부 · 검찰청 · 검사의 헌법 · 법령 위반 등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의 안 번 호	6195
------------	------

제안연월일 : 2024. 12.

제 안 자 : 법제사법위원장

주 문

「국회법」 제127조의2에 따라 감사원에 대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감사를 요구한다.

1.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하여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이 회의를 소집하고 집단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서울남부지검 검사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들이 집단성명을 발표하는 등 일련의 행위가 있었는데, 동 검찰청 검사들의 행위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다는 의혹에 대한 감사
2. 검사들의 국회 탄핵소추와 특정 정당의 정치활동에 대한 반대활동과 관련,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과 정치운동 금지 위반 등 법령위반 의혹에 대한 감사
3.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법령을 위반한 검사들에 대한 징계 및 감찰을 진행하지 않고 소속 공무원의 법령위반 행위를 방조, 조장한 법무부 · 대검찰청 · 고등검찰청 · 해당 지방검찰청의 직무유기를 시정하

고, 징계 및 감찰 등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한 감사

4.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탄핵소추된 검사들을 비호하고 변호사비 지원을 목적으로 규약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검찰동우회와 대검찰청의 직무가 「검찰청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의혹에 대한 감사

제안이유

1.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하여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이 회의를 소집하고 집단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서울남부지검 검사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들이 집단성명을 발표하는 등 일련의 행위가 있었는데, 동 검찰청 검사들의 행위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다는 의혹에 대한 감사

국가공무원은 「헌법」 제7조,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제2항과 제66조제1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그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며,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할 수 없음. 또한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등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와 집단 행위는 금지하고 있음. 또한, 「검사윤리강령」 제3조는 ‘검사는 정치 운동에 관여하지 아니하며, 직무 수행을 할 때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고 규정하여 검사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고 있음.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은 위법한 검사 탄핵에 반발하여 2024년 11월 26

일 부장검사 회의를 소집하고 국회의 고유권한인 탄핵소추권을 부정하며 특정 정당의 정치활동을 반대하는 입장을 부장검사 명의로 발표함.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1·2·3차장 검사도 같은 취지의 공동 입장문을 검찰 내부망에 발표했으며, 이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검사들도 집단적으로 공동입장문을 발표함. 대검찰청은 같은 입장의 입장문을 기자들에게 배포함.

한편, 경찰의 경우 지난 2022년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행위에 대해 징계와 감찰을 신속하게 진행한 바 있음.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총경은 대기발령 조치하고, 회의 참석자들에 대해서는 감찰에 착수하기도 함. 또한, 2023년 서이초 교사 추모를 위해 집회에 참가한 교사들에 대해 교육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함.

이와 같은 경찰과 교사에 대한 조치와 비교할 때 검찰의 집단행동에 대한 징계와 감찰조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무원의 위법한 행위를 바로잡고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검찰청 검사들의 「헌법」 및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의혹에 대해 감사할 필요가 있음.

2. 검사들의 국회 탄핵소추와 특정 정당의 정치활동에 대한 반대활동과 관련,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과 정치운동 금지 위반 등 법령위반 의혹에 대한 감사

「헌법」 제7조제2항은 ‘공무원은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이 정하고 있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제2항은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검찰청법」 제4조제3항은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며 검사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부장검사들은 위법행위를 한 검사 탄핵에 반발하며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상 검사들에 대한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를 제시하며 특정 정당의 정치활동을 반대했음. 또한 대검은 ‘중대한 위헌·위법을 인정할만한 근거가 전혀 없다’며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탄핵소추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힘.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차장·부장검사들도 국회가 탄핵을 ‘시도하는 것은 그 자체가 권한 남용이다’며 국회의 고유권한인 탄핵소추권을 부정하며 삼권분립 원칙을 부정하는 입장을 발표함. 이에 동조한 검사들도 국회의 고유권한을 부정하며 특정 정당의 정치활동을 반대하는 글을 검찰내부망 이프로스에 게시하고 있음. 이프로스가 검찰 내부망이라 할지라도 법조기자들의 주요 취재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검사 자신들의 글과 댓글이 공공에 전파될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고, 실제 언론을

통해 많은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음.

특정 정당의 정치활동을 반대하고 삼권분립 원칙을 부정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검사들의 위법한 행위를 선동하는 등 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유기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정치운동 금지 위반 등 각종 법령 위반 의혹이 있는 검사들에 대한 감사가 필요함.

3.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법령을 위반한 검사들에 대한 징계 및 감찰을 진행하지 않고 소속 공무원의 법령위반 행위를 방조, 조장한 법무부·대검찰청·고등검찰청·해당 지방검찰청의 직무유기를 시정하고, 징계 및 감찰 등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한 감사

「정부조직법」 제7조, 제32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고 검찰사무를 관장하게 되어 있음. 「검찰청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여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하게 되어 있고, 「검사징계법」 제7조에 따라 검찰총장은 징계를 요구할 수 있음. 또한 「법무부감찰규정」 제15조제1항은 ‘법무부 및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진정·비위 사항은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의 요건이 되는 행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조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제4조제1항 ‘각급청의 장은 검찰공무원의 비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지체 없이 징계 등 신분에 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음. 이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고 직무를 유기할 경우 「형법」 제122조에 따라 처벌할 수 있음.

검찰총장은 검사에 대한 감찰권과 징계 요구권을 갖고 있음. 강력한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총장이 잘못된 판단을 할 경우 검찰조직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변질돼 통제하기 어려워질 것임.

지난 9월 3일 심우정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후보자가 검사 탄핵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이후, 심우정 검찰총장을 비롯한 각급청의 장은 위법한 행위를 한 검사들에 대해 그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하고 있으며, 검사들의 위법한 집단행동과 집단성명 발표 등 정치행위에 대해서도 방조·조장하고 있음.

또한, 법무부도 위법 행위를 하고 있는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실시하지도 않는 등 책임을 방기하고 있음.

이에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법령을 위반한 검사들에 대해 징계 및 감찰을 실시하지 않는 등 소속 공무원의 법령위반 행위를 방조, 조장한 법무부·대검찰청·고등검찰청·해당 지방검찰청의 직무유기에 대한 감사가 필요함.

4.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탄핵소추된 검사들을 비호하고 변호사비 지원을 목적으로 규약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검찰동우회와 대검찰청의 직무가 「검찰청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의혹에 대한 감사

대검찰청은 탄핵 대상이 된 검사들을 비호하고 소송비용을 지원할 목적으로 일선 청에 ‘검찰동우회 규약 개정 관련 의견조회’ 공문을 발송하여 검찰동우회의 규약 개정 추진을 독려하였음.

검찰동우회가 적자로의 전환 위기에 놓여 있어 퇴직전별금 수익률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로 탄핵소추된 검사들의 변호사비까지 지원하겠다는 것은 국회의 검사탄핵소추에 대한 부정이며 삼권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임. 또한 검사들의 위법한 행위를 비호하는 것으로 보여 「검찰청법」과 「검사징계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의혹이 있음.

이에 공무원의 위법한 행위와 공직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위법한 검사들을 비호하고 국회의 탄핵소추권을 부정하는 검찰동우회와 대검찰청의 직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함.